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15
----------	------

2025년 6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3일, 이새날 의원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6월 19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이새날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로 7017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에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을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2) 시장의 책무로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서울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 3)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로 7017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에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로 7017(이하 “서울로”)’은 노후 고가도로의 구조 보강, 시설 개선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고가 보행로(’17.5.20. 개장)로 운영·관리되고 있는 시설로 현행 조례는 시민에게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17.7.13.)된 바 있음.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2021년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킵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¹⁾ 하는 등 보행편의 제고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서울로’는 고시²⁾를 통해 ‘보행자전용길’로 지정된 ‘보행로’이나, 아직까지 현행 조례에 ‘보행자전용길’에 대한 정의가 없고 차량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통해 이를 보완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세부적으로 안 제3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³⁾를 준용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

1) 서울시 교통실 보행자전거과(’24.11.5.), “전국 최초 ‘킵보드 없는 거리’ 지정… 시민 80% 보행 중 불편 겪어”

2) 서울특별시고시(제2017-119호, ’17.4.6): ‘보행자전용길 지정 고시’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

하는 것이며, 안 제12조제2항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차마⁴⁾’ 운전자가 ‘서울로 보행자전용길’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견 없음.

안 제12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⁵⁾를 근거로 서울로 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 금지 및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공원관리청의 일관된 정책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4. "보행자우선도로"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4) 제2조(정의) 17. “차마”란 다음 각 목의 차와 우마를 말한다.

가. “차”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자동차
- 2) 건설기계
- 3) 원동기장치자전거
- 4) 자전거
- 5)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 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는 제외한다.

나. “우마”란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5) 제22조(금지행위 적용대상) ①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3.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예술·체형·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부터 만리동1가 83까지 일대에 조성된 서울로 내 고가보행로 및 본선 연결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을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로를 보행”으로, “보행환경을 조성”을 “보행권을 보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를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차량 이외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2.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내려서 끌고가는 경우 제외)
3. 그 밖에 유아차,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 로봇 이외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통행

③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서울로 보행자전용길</u> ”이란 <u>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부터 만리동1가 83까지 일대에 조성된 서울로 내 고가보행로 및 본선 연결로를 말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u>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 <u>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로를 보행</u> ----- ----- <u>보행권을 보장</u>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u>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u> 2. <u>관리차량, 유아차, 휠체어 이</u>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u> <u>서</u> ----- ----- -----. 1. <u>관리차량 이외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u> 2. <u>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u>

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신 설〉

〈신 설〉

제13조(행정지도) 시장은 제13조
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통행(내려서 끌고가는 경우 제
외)

3. 그 밖에 유아차, 휠체어,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
기, 실외이동로봇 이외의 동력
(動力)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통
행

③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
한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관
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지도) ----- 제12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새날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15
----------	------

발 의 년 월 일 : 2025년 05월 23일

발 의 자 : 이새날 의원(1명)

찬 성 자 : 강석주, 김용호, 김원중,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이봉준, 이상욱,
이종태, 이종환 의원(11명)

1. 제안이유

- 서울로 7017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에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을 정의함(안 제2조제4호 신설)
- 나. 시장의 책무로 시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서울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부터 만리동1가 83까지 일대에 조성된 서울로 내 고가보행로 및 본선 연결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을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로를 보행”으로, “보행환경을 조성”을 “보행권을 보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를 “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리차량 이외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
2.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내려서 끌고가는 경우 제외)
3. 그 밖에 유아차,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 로봇 이외의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통행

③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 중 “제13조”를 “제1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u>서울로 보행자전용길</u> ”이란 <u>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부터 만리동1가 83까지 일대에 조성된 서울로 내 고가보행로 및 본선 연결로를 말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u>서울로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u> ②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 <u>쾌</u> <u>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로를 보행</u> ----- ----- <u>보행권을 보장</u>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생 략) ② 누구든지 <u>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u>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u>거리가게에 의한 상행위</u> 2. <u>관리차량, 유아차, 휠체어 이</u>	제12조(행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u>서울로 보행자전용길에</u> <u>선</u> ----- ----- -----. 1. <u>관리차량 이외의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u> 2. <u>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의</u>

외에 바퀴가 달린 차량의 통행

〈신 설〉

〈신 설〉

제13조(행정지도) 시장은 제13조
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통행(내려서 끌고가는 경우 제
외)

3. 그 밖에 유아차, 휠체어, 보행
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
기, 실외이동로봇 이외의 동력
(動力)으로 작동하는 장치의 통
행

③ 누구든지 서울로에서 시장의
허가 없이 거리가게에 의한 상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
한 행사의 경우에는 서울로의 관
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범위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지도) ---- 제12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로 7017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보장하고 보행자전용길에서 자동차,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통행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